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. 11. 25 선고 2015가단468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11. 4.

판결 선고 2015. 11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(가)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은 충주시 C 전 647m²의 공유자들이고, 피고는 위

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(가) 기재 건물[별지 도면(나)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A)부분 지상 단층주택 및 창고 167.77m²]을 소유하고 있다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매년 10만 원씩의 차임을 지급하였는데, 2010. 1. 1.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. 이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다.

2. 적용법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형결

별지